평창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

(지광천 의원)

의안 번호	439

발의연월일: 2022년 01월 13일
발 의 자 지광천 의원
찬 성 자 이주웅, 박찬원, 장문혁의원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우리군 농업인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으로서 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안 제3조)

나. 이자보조 지원 대상 사업(안 제4조)

다. 이자보조 비율 및 지원한도(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라. 대출 금융기관과 협약(안 제7조)

마. 미지급 및 환수(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입법예고 : 2022. 01. 05. ~ 2022. 01. 10.(5일간), 의견 없음.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1. 12. 27.~ 2021. 12. 30. 아래표 참고.

조례안	제출 의견(농업축산과)	의회 의견
제3조(지원 대상) ①농어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대상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 한다. 제4조(대상사업) 농어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는 보조사업은 제외한다. 1. 농축수산물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 사업 2. 농축수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업 3. 농어업소득 증대 및 소득원 개발, 영농 기계화에 관한 사업 4.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 개·보수 사업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에 의거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추진 중임으로 조례안 각 조 어업 및 수산물 삭제	【수용】 영어자금 이자보전이 2013년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작년 ‘21년 기준 도비 30%, 군비 70%비율로 영어자금 발생이자의 20%이내 지원하는 사업임.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농업인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이자보조금”이란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보전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대상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대상사업) 농어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는 보조사업은 제외한다.

1. 농축산물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 사업

2. 농축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업

3. 농업소득 증대 및 소득원 개발, 영농 기계화에 관한 사업

4.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운영 자금 및 시설 개·보수 사업

제5조(이자보전율)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 비율은 대출금리의 50퍼센트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연체이자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한도 및 기간) 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은 융자금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5년 이내로 한다.

제7조(협약체결)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8조(미지급 및 환수)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2.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3.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4.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 지 않은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5., 2015. 12. 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2015. 12. 22.>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5조(이자보전율)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 비율은 대출금리의 50퍼센트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연체이자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한도 및 기간) 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은 융자금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5년 이내로 한다.

제7조(협약체결)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출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결정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지광천의원
연락처	(033) 330 -2505